

[일련번호 : 2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인적사항 미공개 및 강사 해촉보고 지연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△△동

내 용

1. 업무개요

△△동은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 조례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회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고,

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4조에 따르면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들의 주요 인적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동 주민센터의 홈페이지,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또한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동장은 강사를 위·해촉할 경우에는 위·해촉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△△동은 20**. *. **.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 ***의 인적사항을 동주민센터 홈페이지, 게시판 등에 공개하지 않았으며, 자치회관 프로그램강사 *** 외 5명의 위·해촉 보고를 최소 5일에서 최대 24일 지연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다.

[표] 프로그램 강사 해촉보고 지연 현황

연번	강좌명	강사명	해촉일	해촉보고일	지적사항
1			2024.1.31.	2024.3.15.	해촉보고 24일 지연
2			2024.2.29.	2024.3.15.	해촉보고 5일 지연
3			2024.6.30.	2024.7.31.	해촉보고 18일 지연
4			2024.6.30.	2024.7.12.	해촉보고 5일 지연
5			2024.7.1.	2024.7.12.	위촉보고 5일 지연
6			2024.9.30.	2024.11.1.	해촉보고 16일 지연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△△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△△동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,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회 운영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